

세무회계연습

이철재 · 정우승 공저



TAX ACCOUNTING PRACTICE

+ 추록 : 2023년 5월 15일 발행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세무회계연습1] (이철재·정우승) 34판 1쇄
[세무회계연습2] (이철재·정우승) 34판 1쇄
- 주요 내용 :
출간 이후 세법개정사항 및 수정사항



1.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소득-126	상 2	거주자 갑의	거주자 갑(55세)의
부가-113	상 7	2023년 제2기	2023년 제1기
부가-156	상 6	22,500,000	26,500,000
상증-10	하 1	상속을 <u>초</u> 기하고	상속을 <u>포</u> 기하고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관련 수정사항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고, 최저사용금액 차감순서가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사용분 → 도서 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로 조정된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 소득-174 상3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1,000,000	—	1,000,000	80%	800,000
전통시장사용분	10,000,000	7,000,000	3,000,000	40%	1,200,000
도서 등 사용분	— *1	—	—	30%	—
직불카드사용분	7,000,000*3	7,000,000	—	30%	—
신용카드사용분	6,000,000*2	6,000,000	—	15%	—
합 계	24,000,000	20,000,000*4	4,000,000		2,000,000

❑ 소득-180 상6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350,000	—	350,000	80%	280,000
전통시장사용분	15,000,000	—	15,000,000	40%	6,000,000
도서 등 사용분	1,000,000*1	—	1,000,000	30%	300,000
직불카드사용분	7,000,000*2	6,200,000	800,000	30%	240,000
신용카드사용분	6,300,000*3	6,300,000	—	15%	—
합 계	29,650,000	12,500,000*4	17,150,000		6,820,000

◆ 소득-186 하7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80% 공제율 적용대상	
	40% 공제율 적용대상	
	30% 공제율 적용대상	
	15% 공제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 소득-188 상2행 ~ 하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80% 공제율 적용대상	200,000
	40% 공제율 적용대상	1,500,000
	30% 공제율 적용대상	0
	15% 공제율 적용대상	19,900,000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720,000

(주) (1) 공제가능금액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200,000	0	200,000	80%	160,000
전통시장사용분	1,500,000	100,000	1,400,000	40%	560,000
도서 등 사용분	—	—	—	30%	—
직불카드사용분	0	0	0	30%	0
신용카드사용분	19,900,000	19,900,000	0	15%	0
합 계	21,600,000	20,000,000*	1,600,000		720,000

* 80,000,000 × 25% = 20,000,000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 ① + ② = 720,000

① 기본공제액 : $\text{Min}[720,000, 2,500,000] = 720,000$

② 추가공제액 : $\text{Min}[\text{a}, \text{b}] = 0$

③ 기본공제 한도초과액 : 0

④ 한도 : $\text{Min}[\text{대중교통이용분} \times \text{공제율} + \text{전통시장사용액} \times \text{공제율}, 200\text{만원}]$
 $= \text{Min}[200,000 \times 80\% + 1,500,000 \times 40\%, 2,000,000]$
 $= 760,000$

◆ 소득-193 하12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500,000	—	500,000	80%	400,000
전통시장사용분	5,000,000	3,500,000	1,500,000	40%	600,000
도서 등 사용분	300,000* ¹	300,000	—	30%	—
직불카드사용분	13,000,000* ²	13,000,000	—	30%	—
신용카드사용분	700,000* ³	700,000	—	15%	—
합 계	19,500,000	17,500,000* ⁴	2,000,000		1,000,000

◆ 소득-198 하12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	—	—	80%	—
전통시장사용분	1,000,000	—	1,000,000	40%	400,000
도서 등 사용분	—	—	—	30%	—
직불카드사용분	—	—	—	30%	—
신용카드사용분	20,000,000* ¹	11,750,000	8,250,000	15%	1,237,500
합 계	21,000,000	11,750,000* ²	9,250,000		1,637,500

◆ 소득-205 상2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	—	—	80%	—
전통시장사용분	2,000,000	—	2,000,000	40%	800,000
도서 등 사용분	—	—	—	30%	—
직불카드사용분	—	—	—	30%	—
신용카드사용분	43,000,000* ¹	16,525,000	26,475,000	15%	3,971,250
합 계	45,000,000	16,525,000* ²	28,475,000		4,771,250

◆ 소득-208 하6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합 계
전 통 시 장	3,500,000원	500,000원	200,000원	4,200,000원
대 중 교 통	200,000원	100,000원	-	300,000원
위 외의 사용분*	28,300,000원	4,900,000원	1,000,000원	34,200,000원
합 계	32,000,000원	5,500,000원	1,200,000원	38,700,000원

◆ 소득-212 상12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주)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300,000		300,000	80%	240,000
전통시장사용분	4,200,000		4,200,000	40%	1,680,000
도서 등 사용분				30%	
직불카드사용분	5,900,000 ^{*1}		5,900,000	30%	1,770,000
신용카드사용분	28,300,000	20,500,000	7,800,000	15%	1,170,000
합 계		20,500,000 ^{*2}			4,860,000

◆ 소득-226 하10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1,000,000	-	1,000,000	80%	800,000
전통시장사용분	2,500,000	-	2,500,000	40%	1,000,000
도서 등 사용분	2,000,000	-	2,000,000	30%	600,000
직불카드사용분	12,000,000 ^{*1}	6,800,000	5,200,000	30%	1,560,000
신용카드사용분	3,200,000 ^{*2}	3,200,000	-	-	-
합 계	20,700,000	10,000,000 ^{*3}	10,700,000		3,960,000

◆ 소득-227 상1행 (2)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2) 공제액 : 1) + 2) = **3,960,000**

1) 기본공제액 : $\text{Min}[3,960,000, 3,000,000] = 3,000,000$

2) 추가공제액 : $\text{Min}[\text{㉠}, \text{㉡}] = 960,000$

① $3,960,000 - 3,000,000 = 960,000$

② $\text{Min}[1,000,000 \times 80\% + 2,500,000 \times 40\% + 2,000,000 \times 30\%, 3,000,000] = 2,400,000$

◆ 소득-232 하10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300,000		300,000	80%	240,000
전통시장사용분	4,000,000		4,000,000	40%	1,600,000
도서 등 사용분	-		-	30%	-
직불카드사용분	0		0	30%	0
신용카드사용분	27,000,000* ¹	20,000,000	7,000,000	15%	1,050,000
합 계	31,300,000	20,000,000* ²	11,300,000		2,890,000

◆ 소득-233 상1행 (2)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2) 소득공제액 : ① + ② = **2,890,000**

① 기본공제액 : $\text{Min}[2,890,000, 2,500,000] = 2,500,000$

② 추가공제액 : $\text{Min}[\text{㉠}, \text{㉡}] = 390,000$

㉠ 기본공제 한도초과액 : **390,000**

㉡ 한도 : $\text{Min}[300,000 \times 80\% + 4,000,000 \times 40\%, 2,000,000] = 1,840,000$

◆ 소득-246 상13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계
전통시장사용분	2,000,000원	100,000원	600,000원	2,700,000원
대중교통이용분	95,000원	10,000원	-	105,000원
도서 등 사용분*	-	-	-	-
위 이외의 사용분	21,000,000원	1,200,000원	1,300,000원	23,500,000원
합 계	23,095,000원	1,310,000원	1,900,000원	26,305,000원

❑ 소득-250 상9행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용액	최저사용액	공제대상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	105,000	—	105,000	80%	84,000
전통시장사용분	2,700,000	—	2,700,000	40%	1,080,000
도서 등 사용분	—	—	—	30%	—
직불카드사용분	2,500,000*1	900,000	1,600,000	30%	480,000
신용카드사용분	21,000,000	21,000,000	—	15%	—
합 계	26,305,000	21,900,000*2	4,405,000		1,644,000

❑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관련 그 밖의 수정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소득-172	상 5	④ 대중교통이용액(직불카드) : 2,000,000원	④ 대중교통이용액(직불카드) : 1,000,000원
소득-179	하 1	대중교통이용액 700,000원	대중교통이용액 350,000원
소득-180	하 2	Min[15,000,000×40%(전통) + 700,000×40%(대중) + 1,000,000×30%(도서 등)]	Min[350,000×80%(대중) + 15,000,000×40%(전통) + 1,000,000×30%(도서 등)]
소득-191	하 4	③ 전통시장 ~ 1,000,000	③ 전통시장 ~ 5,000,000
	하 3	④ 대중교통 ~ 5,000,000	④ 대중교통 ~ 500,000
소득-203	상 5	대중교통 사용분 2,000,000원	전통시장 사용분 2,000,000원
소득-205	하 11	Min[2,000,000×40%, 2,000,000]	Min[2,000,000×40%, 3,000,000]
소득-212	하 4	Min[4,200,000×40% + 600,000×40%	Min[300,000×80% + 4,200,000×40%
소득-226	상 7	3,560,000 ^(주4)	3,960,000 ^(주4)
소득-232	상 6	2,770,000 ^(주3)	2,890,000 ^(주3)
소득-250	하 7	Min[2,700,000×40% + 210,000×40%	Min[105,000×80% + 2,700,000×40%
소득-251	하 6	대중교통이용분은 210,000원이고,	대중교통이용분은 105,000원이고,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 계산 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 관련 수정사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되므로 수입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어느 한 국가에서 지점 형태로 진출하여 얻은 소득과 자회사 형태로 받은 배당이 모두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 계산 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교재에는 법령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정의에 이를 차감하는 규정이 없어 전체 국외원천소득으로 해석하여 이를 포함하여 해답을 작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수입배당금액 자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해답을 수정합니다.

❑ p.법인-499 상12행 ②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textcircled{2} \text{ 공제한도} : 106,635,000 \times \frac{165,000,000^*}{666,500,000} = 26,398,762$$

* A국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200,000,000 - 30,000,000) - 5,000,000 = 165,000,000$

❑ p.법인-500 상1행 (3)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3)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000,000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상 분자에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p.법인-530 하9행 ~ 하17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구 분	금 액
세액공제 대상 간접외국납부세액	① 0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한 도 액	② 5,600,000 ^(주1)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액	③ 4,500,000 ^(주2)

$$\text{(주1)} \quad 56,000,000^{\text{*1}} \times \frac{40,000,000^{\text{*2}}}{400,000,000^{\text{*1}}} = 5,600,000$$

*1 최저한세 적용 후 과세표준 : $350,000,000 + 50,000,000 = 400,000,000$

최저한세 적용 후 산출세액 : $18,000,000 + (400,000,000 - 200,000,000) \times 19\% = 56,000,000$

*2 국외원천소득 : $[40,000,000(\text{수익}) - 2,500,000(\text{비용})] + 2,500,000(\text{손금불산입}) = 40,000,000$

4. 법인세 13장 문제 8번 해답 수정

☐ p.법인-446 상2행 ~ 하7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하세요.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600,000	상 여			
건 설 중 인 자 산	3,800,000	유 보			
계열회사 지급이자 ^(주1)	750,000	기타외유출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주2)	6,974,559	기타외유출			
대표이사 인정이자 ^(주3)	1,356,164	상 여			
상무이사 인정이자 ^(주4)	1,449,863	상 여			
(주)마포 인정이자 ^(주5)	286,301	기타외유출			

(주1) 계열회사 차입금 지급이자(고리차입)

- ① 회사계상 이자비용 : 2,250,000
- ② 적정이자 : 차입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5,475,000,000 \times 10\%^{*1} \times 1/365 = 1,500,000$
- ③ 차이 : ② - ① = 750,000^{*2}

$$*1 \text{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frac{\sum(\text{차입금잔액} \times \text{이자율})}{\sum \text{차입금잔액}}$$

$$= \frac{2,400,000 + 6,000,000 + 3,800,000}{(2,400,000 \div 20\%) + (6,000,000 \div 12\%) + (3,800,000 \div 10\%)} = 12.2\% \Rightarrow 12\%$$

대여법인(주광주)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15%)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주위너스)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12%)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10%)을 적용한다.

*2 현저한 이익 검토 : 750,000 ≥ 1,500,000 × 5%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해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주2)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자산적수}}{\text{차입금적수}} (\leq 1)$$

$$= 9,900,000^{*1} \times \frac{9,125,000,000^{*2} + 10,675,000,000^{*3}}{28,105,000,000^{*1}} = 6,974,559$$

*1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구 분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사 채	20%	2,400,000	2,400,000 ÷ 20% × 365
은 행 차 입 금	12%	6,000,000	18,250,000,000
계열회사 차입금	15% → 10% ^(주1)	2,250,000 - 750,000 ^(주1)	5,475,000,000
합 계		9,900,000	28,105,000,000